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3일) 상정

·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3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훈)

□ 개정이유

○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일치한 종류별·직급별 초과인원 110명 가운데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되지 않은 83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 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총 정원 : 1,934명(현원 1,925명)

· 집행기관 : 1,908명

· 의회 : 26명

○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초과하는 현원 100명을 83명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2년 8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조정함(안 부칙 제2조 제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몇 번에 걸쳐 개정하는 조례인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이번이 3번째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자주 조례를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다른 규정은 없는지, 행정낭비의 요인이라 생각되는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초과현원에 대한 관리방법은 행자부 규정에 의거 6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시 개정하게 되었으며,○ 새정부 구조조정 마무리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음○ 특히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불부합 정원은 해소될 예정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수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 및 초과인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행자부와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95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3. 19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일치한 종류별·직급별 초과현원 110명 가운데 2003년 2월 28일까지 조정되지 않은 83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 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총 정원 : 1,934명 (현원 1,925명)

- 집행기관 : 1,908 명
- 의회 : 26 명

-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·직급별 초과하는 현원 110명을 83명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2003년 2월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 까지로 하며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조정함(안 부칙 제2조제3항).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73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(2000. 9.25. 조례 제1773호) 제1조 (시행일) (생략)	부 칙(2000. 9.25. 조례 제1773호) 제1조 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및 ② (생략)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10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있는 것 으로 본다	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 하는 현원 8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
제3조(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(생략)	제3조(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(현행과 같음)